

「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6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6월 20일

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황필섭

나. 제안이유

-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32조(매매방법)의 개정·시행에 따른 정가·수의매매 관련 규정을 「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」에 반영하여 정가·수의매매를 활성화하고 농산물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매매방법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서 경매·입찰·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정가·수의매매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를 도모함(안 제41조)

-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매매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품목제한 등 관련 규정을 삭제(안 제43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32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도 FTA농식품유통과와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용 우

□ 본 「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, 이를 반영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,
- 검토결과,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통해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도매시장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